노무법인 로율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14, 1802호 (공덕동, 르네상스타워)

Tel 010) 2890-7948, 02)713-2022 Fax 0303) 3444-2025

smilejhjh@hanmail.net

2026. 3. 9.

■ 제 목 :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 내용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26년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개요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 ·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본 감독을 기획

■ 주요 감독대상 사업장

음식점, 숙박, 제과 · 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소프트웨어, 영상 · 콘텐츠 등 청년을 다수 고용하며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 1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 실시

■ 주요 근로감독 기준

1. 근로시간 기록 · 관리 여부

① 임금대장(자체 급여 시스템 등 포함) 존부와 대통령령에서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근로시간 수,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시간 수 등) 기재 여부 확인, ②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실제 지급된 임금을 비교(근로기준법 제48조 참조)

2. 포괄임금 오남용

출근부, 근태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여부 및 시간을 산정하여 실근로시간(연장 · 야간 · 휴일 실근로시간 수 포함)과 지급된 제 수당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56조)

■ 후속 조치

1.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

2. 시정 조치 및 제도개선 지원

감독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

■ 포괄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26. 2. 13. 발의) 요지

※ 이하 내용은 의결, 공포된 내용이 아님

1. 근로자 동의가 있었으며, 포괄임금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불리하지 않은 경우 : 사전에 수당을 포함해서 약정하되 약정 시간에 미달해도 전액을 보장하는 반면,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 지급

2. 임금대장에 근로일수 및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발생 시 근로일별 그 시간 수 기재.

■ 기타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해 사전 조사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 강화